

祝 辭

崔 永 喆*

오늘 서울대 法學研究所의 주최로 학제, 언론계,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중있는 연구를 해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과정에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정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아주 큰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의 모교에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데 처음 참석하기에 사실 가슴뿌듯한 흥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基本合意書가 채택되고 이번 제 8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3개 분야의 附屬合意書를 조인·발효시킴으로써, 11월부터는 남북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정치문제를 다룰 和解共同委員會, 남북간의 불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軍事共同委員會, 그리고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다룰 經濟問題交流協力共同委員會, 비경제분야인 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가동중인 核統制共同委員會, 이렇듯 5개의 공동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어서의 조문들은 비전문가인 제가 살펴보아도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발족이 갖는 의미를 매우 크게 보면서도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구나, 또 공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논쟁의 터가 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조항들이 위의 합의서에 많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바는 공동위원회의 발족이 갖는 큰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일단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예멘은 20여년 전부터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東西에 사실상 20여년 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많은 제도적, 법률적 보완을 서로가 해왔지만 정작 통일을 이룬 뒤인 지금, 제가 가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보다 20년이 뒤진 이제야 基本合意書에 합의하고 공동위원회가 발족된 우리의 경우에 아무리 치밀하게 대비를 했다고 하여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구름잡는 식의 대비 밖에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이미 1990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 없는 많은 구멍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할 법률적인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으로 생각

*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다루어주실 교류협력의 본격화시에 야기될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선생님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제정 또는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간의 교류협력분야, 특히 經濟協力分野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아직도 놓여 있어서 당장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경제교류 혹은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 사회적 교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록 그것을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核問題입니다. 핵문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경제협력은 머물러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 머무르면서,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또 정부의 자료들과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1972년에 체결된 東西獨間의 基本條約이 동서독간의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 등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독일통일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서독 쪽에서는 경제협력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서독이 동독에게 준 경제지원이 동독의 공산당 집권세력들의 개인적 이익 또 정권유지비용으로 거의 다 쓰여졌고, 동독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독국민들의 인권신장이란든지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산당간부들의 독점물로 되어버렸고,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교류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핵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경제협력분야는 보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것만 해결되어선 되겠느냐는 보수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에 대한 규제, 혹은 자유로운 내왕 혹은 통행, 언론의 자유 등을 포함한 人權問題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문이 열려야지, 그런 것들을 전혀 도의시한 채 핵문제만 해결되면 교류·협력이 된다고 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는 異論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핵문제의 의혹이 제거되면 경제협력을 시작하고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인권문제 등은 共同委員會 또는 아직도 효력을 갖고 있는 分科委員會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고 하는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핵문제가 당장 해결될 기미가 현재로서는 잘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거의 완전하게 해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속합의서에서 큰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

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는 개인기업이 없습니다. 저쪽의 기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黨이 주관하는 黨의 한 分店 비슷한 것인데 통일전선방식에 의해서 각개격파작전으로 나올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을 하여도 남쪽에 있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어떤 회사와 직거래를 하여 협조를 얻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정부를 상대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附屬合意書를 보면 약간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경제협력을 하는 회사 쌍방간에 상담은 시작을 하되 그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국내법의 절차를 지켜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분 끝에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남북의 서로의 내부절차를 거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법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또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협력, 자원의 공동개발 등은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론은 난 셈입니다. 따라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체 내에서 경제협력의 진척상황을 보아서 보완 또는 새로 제정, 폐지해야 할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權교수님께서 문제점들을 전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정부로서 주문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의 權寧星 소장님과 崔松和 교수님, 또 주제논문을 발표해 주실 朴鉉炘 교수님, 崔大權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